

상주시 공고 제2022 - 90호

「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상 주 시



「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한자어를 정비하고, 채주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과 인적보증 제도인 연대보증인의 채권 독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11조, 제16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5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7조)

· 한자어: 계리 → 회계처리, 기장 → 기록

나.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서명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민원서류도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51조 제2항)

다. 연대보증인의 채권 독촉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 개정(안 제118조)

3.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8일까지 상주시장(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상하수도사업소)

2) 전자우편: jaesim@korea.kr

3) 팩 스: 054-536-2566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054-537-55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규칙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